

교원 인사 규정

제정 : 1998. 03. 01.
 개정 : 2019. 02. 15.
 개정 : 2019. 06. 07.
 개정 : 2019. 07. 22.
 개정 : 2019. 09. 06.
 개정 : 2021. 02. 05.
 개정 : 2021. 11. 05.

담당 : 교학팀(950-5406)

----- 목 차 -----

제1조(목적)	제1조의 2(용어의 정의)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교원의 종류와 직급)
제3조(겸직금지)	제3조의2(파견)	제4조(정년)	제5조(임용일 및 임용기간)
제5조의 2(면직제청)	제6조(교원인사위원회)	제7조(임용의 원칙)	제7조2(기간한정임용)
제8조(임용시기)	제9조(교원의 자격)	제10조(연수계산)	제11조(신규임용자의 제한)
제12조(심사)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제14조(임용절차)	제15조(경력조회)
제16조(임용의 취소 및 변경)	제17조(계약서)	제18조(재임용기간)	제19조(재임용시기)
제20조	제21조(심사절차)	제22조	제23조
제24조(정원의 관리)	제25조(승진시기)	제26조(자격)	제27조(승진심사위원회)
제28조(승진절차)	제29조(동일직위 최대연한)	제30조(승진의 제한)	제31조(대상)
제31조의2(정원)	제32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제33조(심사기준 및 절차)	
제34조(휴직)	제35조(휴직의 기간)	제36조(휴직기간의 연장)	제37조(휴직교원의 신분)
제38조(휴직기간의 만료)	제39조(복직교원의 의무)	제40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1조(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42조의2(면직의 사유)	제43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44조(징계)	제45조(징계사유)	제46조(징계의 종류)	제47조(징계의 효력)
제48조(징계절차)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	제50조(포상)	제51조(보수)
제52조(복무)	제52조의2(해외여행)	제52조의3(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	
제53조(인사기록)	제54조(서류보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해임, 파면)을 말한다.(신설16.08.0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개정16.08.05)

② 강사, 비전임교원, 전문연구원, 조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6.08.05)(개정19.06.07.)

제2조의2(교원의 종류와 직급) ① 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비전임교원, 전문 연구원, 조교로 구분한다.(개정2015.0 8.07)(개정19.06.07.)

②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개정2015.08.07)

③ 비전임교원의 종류는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육전담교원 등으로 한다.(개정16.08.05)(개정19.06.07.)

④ (삭제19.06.07.)

⑤ (삭제19.06.07.)

제3조(겸직금지) ① 본 대학교의 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본 대학교의 교원이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2(파견) ① 총장은 교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대학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파견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아울러 파견기관이 본교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견을 신청하는 교원은 파견이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

③ 교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파견기관의 요청 등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 교원은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겸직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 파견된 교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파견지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본교에서의 보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장의 허락 하에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⑥ 파견교원은 파견기간 중에도 본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며 파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2013. 11. 08개정)

- ⑦ 파견기간의 교원업적평가는 중간 수준으로 결정한다.(신설2017.05.12)
- ⑧ 파견기간 중 재임용 신청은 복귀 후 신청하도록 하며, 임용기간도 파견기간동안 연장된다.(신설 2017.05.12)
- ⑨ 파견기간 중 승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파견기관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신설2017.05.12)

제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정관 제 43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임용일 및 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관 제 43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임용만료 이전에 승진 임용된 때에는 승진시부터 재임용 된 것으로 산정한다.(개정16.08.05)
- ②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 ③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재임용과 승급, 정년보장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16.08.05)
 - ④ 파견·연수의 시작일과 복귀일, 휴직·정직의 시작일과 복직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를 원칙으로 한다.(개정16.08.05)
 - ⑤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16.08.05)

제5조의 2(면직제청) 교원이 재직 중에 결격사유와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을 제청한다.(개정16.08.05)

제6조(교원인사위원회) 정관 제51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15.02.06)

제2장 신규 임 용

- 제7조(임용의 원칙)** ① 교원의 임용은 그 자격,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에 의하여 행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문적 능력과 업적이 뛰어나거나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 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13.10.11)
- ②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조건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교원 신규임용에 있어서 특정대학의 편중된 분포를 막기 위해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신규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 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본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 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당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개정09.3.31)
 - ⑤ 삭제(신설 06.12.4)(개정15.02.06)(개정16.08.05)
 - ⑥ 교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매체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신설 2017.04.07)

⑦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신설2017.05.12)

제7조2(기간한정임용) ①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간 기간을 한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신설16.08.05)

② 기간한정임용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자동 면직된다.(신설 18.01.12)

제8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2012.8.10)

1. 전임교원은 대학,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표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 및 연구 실적이 있는 자로서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력		대학졸업자, 동등학력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직명	연구경력			
	조교수	2	1	3
	부교수	4	5	9
	교수	6	9	15

2. 전임교원의 임용은 박사학위 보유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전문분야에 박사학위 보유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를 우선 임용한다.

3.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전임교원의 임용은 정통 기독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본 대학의 성서적 정통보수 신앙노선에 부합되는 자라야 한다.

제10조(연수계산) ① 연구 및 교육경력은 이를 통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은 그 하나만을 계산한다.

제11조(신규임용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16.08.05)

8.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필하지 아니하고 기피 중에 있는 자

9. 재임용에 탈락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16.08.0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신설16.08.05)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신설 16.08.05)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16.08.05)

12. 교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16.08.05)

② 재직 중인 교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신설16.08.05)

제12조(심사) ① 교원의 신규임용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의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비롯한 기초적인 서류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경력 및 연구실적을 검토하여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교육 능력 등을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신앙이 본교의 이념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지원자의 인성, 교육관, 전공지식,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면접을 통해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실제 강의를 하게 하여 강의능력을 평가.

② 삭제(개정2017.05.12)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초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 모집 대상 분야의 전공 교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② 전공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모집 대상 분야의 교원이나 전문가 등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1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심사토록 한다.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면접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교목실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각급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교학팀장이 된다.(개정2015.02.06)

제14조(임용절차) ①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별표1)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학처장은 지원서류 구비여부를 검토 한 후 이를 종합하여 기초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기초심사위원회는 모든 지원자에 대한 기초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전공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전공심사위원회는 소정의 전공심사서와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전공심사위원회장은 위원회를 소집, 위원들이 작성한 전공심사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면접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면접심사위원회는 심사를 다음 3단계로 시행한다.

ㄱ. 지원서류, 기초 및 전공심사결과 검토,

ㄴ. 지원자 면접실시(외국어 구사능력, 강의능력 평가포함).

ㄷ. 종합심사회의

- ⑦ 면접심사위원회는 종합심사회의를 통해 교수임용 후보자 2배수 이상을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18.10.05.)
-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면접심사 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를 심사하여 2배수 이상을 총장에게 추천한다.(개정18.10.05.)
- ⑨ 총장은 추천자 중에서 임용 적임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임용 제청한다.

제15조(경력조회) 교학처장은 임용 확정된 교원의 경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임용의 취소 및 변경) 전조의 조회 결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서) 교원의 임용 시에는 별지서식 (1)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장 재 임 용

제18조(재임용기간) ① 교원재임용은 정관 제43조 2항이 정하는 임용기간을 근거로 하여 재임용을 실시하여 임용계약을 갱신한다.

② 재임용 기간 내에도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에는 재임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9조(재임용시기) 재임용은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 년 2회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삭제 (2005. 12. 15)

제21조(심사절차) ①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5)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은 즉시 그 내용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5)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05. 12. 15)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5)

⑥ 재임용 기간이 도래한 교원이 평가에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재임용 요건을 추가로 부가하여 재임용거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유예기간 내에도 추가된 재임용 요건을 포함하여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거부 유예기간 만료일에 당연 면직된다.(신설16.08.05)

⑦ 재임용거부를 통보 받은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면직된다.(신설16.08.05)

⑧ 원어민 교원의 재임용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신설16.08.05)

제22조 삭제 (2005. 12. 15)

제23조 삭제 (2005. 12. 15)

제4장 승진

제24조(정원의 관리) 총장은 교원의 직급별 인원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실정에 맞추어 교원의 구체적인 비율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승진시기) 교원의 승진은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6.08.05)

제26조(자격) ① 교원이 승진함에는 다음 표에 따른 경력과 연구실적을 구비하여야 한다. 연구실적 산출 기준은 교수업적평가규정 기준에 따른다.(개정16.08.05)

직위구분	소요경력연수	연구실적기준
조교수 → 부교수	조교수 직위에서 만 7년 이상의 경력	총점(700점)중 국내 A급 이상 연구실적이 350점 이상인자
부교수 → 교수	부교수 직위에서 만6년 이상의 경력	총점(600점)중 국내 A급 이상 연구실적이 300점 이상인자

※ 단, 2012.08.10 이전 임용자는 조교수로 임용한 것으로 본다.

※ 국내 A급이상 이라 함은 SCI급 및 KCI급 논문을 말한다. (신설18.01.12)

② 제1항의 연구실적 기준에 있어서 총점은 소요경력연수를 초과한 매1년에 100점씩 총점기준에 추가한 점수로 한다.

③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해외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수, 강의기간으로 인한 휴직 및 교수 연구년으로 인한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5.02.06)

④ 승진대상자는 교원업적평가결과신앙영역의 점수가 평균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등 5인 이내(교학처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5.02.06)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28조(승진절차)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26조의 승진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신앙생활정도, 연구실적,

교수로서의 자질과 품위, 대학발전에 공헌도 등을 토대로 심사한다.

-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1항의 심사를 위해서 현 직위 진급 이후의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준용하여 소정의 승진 심사서를 작성한다.
-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승진여부를 심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④ 총장은 승진대상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제29조(동일직위 최대연한) (삭제 2021.02.05.)

제30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 1. 징계처분 및 직위 해제 중에 있는 자.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가. 감봉(4월 이상) 18월(개정15.02.06)
 - 나. 감봉(4월 미만) 12월(개정15.02.06)
 - 다. 견책 6월(개정15.02.06)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5장 교원정년보장임용 (신설2003. 4. 1)

제31조(대상) 정년보장교원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19.07.22)

- 1.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한 교원
- 2. 교육과 연구업적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인정 받은 자

제31조의2(정원) 정년보장교원임용의 정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신설 19.07.22)

제32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교원의 정년보장 심사를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15. 02.06.)(개정19.07.22)

- ② 삭제(개정19.07.22)
-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총장이 5인 이상의 교원, 직원 및 대학의 신앙과 이념을 공유하는 외부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개정15.02.06) (개정19.07.22) (개정19.09.06)
- ④ 삭제(개정19.07.22) (개정19.09.06)

제33조(심사기준 및 절차) ① 정년보장 교원임용대상자에게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개정19.07.22)

- ②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심사신청서를(별지서식3)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07.22)
- ③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는 심사평정표에(별지서식4)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평정결과 평균점수 80

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19.07.22)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심의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⑤ 총장은 추천자 중에서 정년보장교원임용 적임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임용 제청한다.(개정19.07.22)

제6장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제34조(휴직) 정관 44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휴직의 기간) 정관 제45조에 따른다.(개정15.02.06)

제36조(휴직기간의 연장)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에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휴직교원의 신분) 정관 제46조에 따른다.(개정15.02.06)

제38조(휴직기간의 만료)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

제39조(복직교원의 의무) 복직교원은 휴직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40조(휴직교원의 처우) 정관 제47조에 따른다.(개정15.02.06)

제41조(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제23조에 의하여 자동 면직된 교원과 제24조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원은 휴직 중 급여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 정관 제48조에 따른다.(개정15.02.06)

제42조의2(면직의 사유) 교원의 면직 사유에 대하여는 정관 제4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16.08.05)

제43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정관 제50조에 따른다.(개정15.02.06)

제7장 징 계

제44조(징계) 징계 및 재심청구는 학교법인 복음주의학원의 정관 및 교원징계규정을 따른다. 다만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15.02.06)(개정16.08.05)

제45조(징계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기타 본 대학교 제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

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47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8조(징계절차)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정관 제59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16.08.05)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정관 제66조의2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15.02.06)

제8장 포 상

제50조(포상) 총장은 장기 근속한 교원 및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학술활동에 뛰어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포상 종류 및 그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보 수

제51조(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복 무

제52조(복무) ① 교원은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16.08.05)

② 교원은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 연구 및 교내외 활동에 관한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신설 16.08.05)

③ 교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 등에 전념하여야 한다.(신설16.08.05)

④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6.08.05)

제52조의2(해외여행) ① 교원이 연구 등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서식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16.08.05)

② 학기 중 여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으며, 학기 중 여행으로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보강을 하여야 한다.(신설18.01.12)

1.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2. 한 학기의 여행일수가 통산 1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52조의3(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 ① 교수 자녀가 입학한 경우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해당 교수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신설19.02.15.)

② 교수 자녀가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수강 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수강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19.02.15.)

③ 사전 신고된 강의는 최종 성적 부여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한다. 단, 본조 ②항에 따르는 신고자가 학과장일 경우 학과회의를 통해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할 교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19.02.15.)(개정21.11.05.)

④ 수강사실 미신고와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징계한다.(신설 19.02.15.)

제11장 인사 기록

제53조(인사기록)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본교 교학처 교학팀에서 한다.(개정 2015.02.06)

제54조(서류보관) 전조의 인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인사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포상에 관한 서류
3. 징계에 관한 서류
4. 교육 훈련에 관한 서류
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 26조 1항의 연구실적기준과 제29조의 동일직위 최대연한에 있어서 2000년 3월 1일 이전 임용자는 2000년 3월 1일을 그 기산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 규정 시행 당시의 파견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교원 임용 계약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이하 “갑”이라 한다)은(는)
(이하 “을”이라 한다)과(와) 교원임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임용직위) “갑”은 “을”을 한국성서대학교 로 임용한다.
2. (임용기간) “을”의 임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보수) “을”의 보수는 등급별 연봉제로 하며, “갑”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별도로 정한다.
4. (의무) “을”은 임용기간 중 한국성서대학교 교원으로서 첨부의 임용조건과 학내 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재계약) “을”과 “갑”은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전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6. (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인)

“을” : (주 소)

(성 명)

(인)

임용조건

1. “갑”(이하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

“갑”은 한국성서대학교의 신앙신조, 설립이념, 교육목표, 대학헌장,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이행하며, “을”의 호봉, 진급, 보직 및 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을”이 본 임용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책임을 물어 해약할 수 있다.

2. “을”(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

- 1) 교원은 ①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신앙고백(별첨1)을 본인의 신앙고백으로 확인하며(서명 : _____) , ② 설립목적과 이념, 그리고 교육목표(별첨2)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서명 : _____) , ③ 대학헌장,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위의 ①항, ②항, ③항을 가르치는 일과 교원으로서의 근무 시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 2) 교원은 총장, 소속 분야 및 기타 상급자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에 응할 의무가 있다.
- 3) 교원은 강의시간을 포함 주 3일 반(28시간) 이상을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해야 한다. 대학교의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대학교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 4) 교원은 개학기간 중에는 휴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병가 및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이상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방학기간 중의 휴가 또는 해외 출장은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교원은 대학교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개인지도교수로서 특별히 위임 받은 학생들을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한다. 교원은 또 각종 대학교의 행사 및 학생들의 과외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학생이나 학부모 기타 외부인들이 대학교에 관한 타당한 상담 또는 문의 시 친절하게 상담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을 오도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사항에 순복해야 한다.
- 6) 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7) 교원은 대학교에서 매일 아침(오전 8시 30분)에 드리는 교직원 기도회와 학기 중 매일 주야간에 드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총장이 소집하는 교수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임용조건에 동의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학교의 제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별첨1)

우리의 신앙고백

한국성서대학교

나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과 인생은 하나님의 직접 행동으로 창조된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육과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얻으신 승리의 속죄와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과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육체의 부활과 그의 재림하실 것과 성령으로 인한 중생의 신생과 하나님의 은혜로써 주어진 선물인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서는 사단법인 성서선교회의 신조인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서 본 선교회 산하의 모든 교회의 교역자, 성도 및 모든 교육기관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숙히 서약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1.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성서전체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출17:14, 34:27, 민33:2, 사8:1, 30:8, 34:16, 렘25:13, 30:2, 36:27, 32, 겔24:1,2, 단12:4, 하2:2). 이상은 성서의 영감에 대한 구약의 증명이요 신약도 역시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마15:4, 행1:16, 히1:5, 3:7, 4:3, 5:6, 7:21, 고전2:11-14, 14:37, 고후13:3, 살전2:13, 딤후3:16).

2. 성부로서의 하나님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계시인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알 뿐이다.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현현하여 계신다. 성부라는 이름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제일위이심을 표시하는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요(고전8:6, 엡3:14-15, 히2:9, 골1:17) 전 인류의 생명의 시작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인 참된 기독교자들의 아버지로서 계시되었다(마5:45, 6:6-15, 요1:14, 18, 5:17-26, 8:54, 14:12-13, 롬8:15, 요일1:3).

3. 성자로서의 하나님

성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서 삼위일체의 제이위이다. 그는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우주의 보존자이시며 빛이시요, 생명이시며 전 인류의 구속주이시다(요1:20-30, 롬9:5, 빌2:6, 요1서5:20). 그러므로 그에게는 신적 이름과(렘23:5-6, 사9:6) 신적 속성이 부여되었다(사9:6, 마18:20, 요2:24-25, 21:7, 빌3:21, 계1:8). 따라서 그의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는 신적이었다(마 9:2-7, 눅10:22, 요3:35, 엡1:22, 빌3:21, 골1:17, 히1:10-12). 그러기에 그에게는 신적 영광이 부여 되었다(요5:22, 25-30, 엡1:3-14, 계

1:9-20).

4.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똑 같이 인격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오(요14:16-17, 26, 15:26, 16:7-15, 롬 8:26, 엡4:30, 행16:7, 고전12:11, 창1:2, 6:3, 행8:29, 13:2, 고전2:10-11, 눅1:35, 4:14, 행10:38, 롬8:11, 15:13, 고전2:4) 그리스도의 영이시며(롬8:9, 갈4:6) 그리스도에 의하여 파송되었으나(요16:7) 그리스도와 동일하시며(고전2:10-11, 고후3:17) 또한 신적 이름과(행5:3-4, 고전3:10, 딤후3:16) 신적 완성이 부여되어 있다(시139:7-10, 사40:13, 15, 12:11, 히9:14).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업은 곧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다(창1:3, 욥26:13, 시33:6). 성령은 이 업무에 완성을 위하여 인간의 심령에 감동감화의 역사를 통하여(출28:3, 31:2-3, 35:35, 3:22, 요3:34, 고전2:13, 벧후1:21) 교회를 건설하사 그 안에 임재하시며 인도하신다(엡1:22-23, 고전3:16, 12:4, 요14:26, 16:13-14, 행5:32, 히10:15, 요일2:27).

5. 인간론

인생의 기원

우주 전체 즉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로써 창조하셨으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생은 절대로 진화의 결실이 아니다(창1:26-27, 2:7, 18-19, 21-25, 5:1, 9:6, 고전11:7, 골3:10).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셨으니 이는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생의 타락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범죄는 그 후손인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전 인류는 그 죄의 댓가로서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롬5:12-19, 엡2:3). 따라서 인간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선이라고는 행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다(요5:42, 롬7:18-23, 8:7, 고후7:1, 엡4:18, 딤후3:2,4, 딤후1:15, 히3:12). 따라서 인간은 그 자신이 자기 죄의 사슬을 벗어나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요1:13, 34, 3:5, 6:44, 15:4,5, 롬 7:18, 24, 8:7, 8:1, 고전 2:14, 고후3:5, 엡2:1, 8-10, 히11:6). 그리고 이 죄는 보편적이요(왕상 8:46, 시143:2, 잠20:9, 전7:20, 롬3:1-12, 갈3:22, 약3:2, 요1서1:8,10) 선천적이니(시151:5, 욥 14:4, 요 3:6) 이로 인하여 인생은 영원히 유죄 선고 아래 있는 것이다(롬5:12-14, 요3:5, 엡2:3, 요 일5:12). 이상은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다.

6.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완전한 인생으로 탄생하셨다(마1:20, 8:29, 26:63, 눅1:34-35, 요1:14, 18, 49, 3:16, 11:27, 롬8:3, 갈 4:4, 요일4:2). 그러기에 성육신하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시로되 죄는 없으시다(고후5:21, 빌2:5-8).

7.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전 생애는 탄생하시던 그 순간부터 형극의 길이요 고난의 생애였다. 그의 고난은 오직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을 대속적 번제물로 봉헌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험악한 갈보리 도상이었다(신21:23, 사53, 마4:1-11, 눅22:28, 요1:29, 12:27, 행13:38-39, 롬3:26,

5:6-8, 고후5:21, 갈3:13, 히2:18, 4:15, 5:7-9, 9:28, 벧전2:24, 3:18).

8.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영육의 완전 재결합과 동시에 그의 인간성 안에 있는 본래의 순수성과 완전성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칭의와 종생과 영생의 보증이며 참된 기독교자들의 미래의 부활을 약속하신 처음 익은 열매이다(막16:9-11, 14-18, 눅24:31, 36, 39, 요20:11-29, 21:7, 행1:3, 9-11, 2:23-24, 3:13-15, 7:55-56, 롬4:24-25, 6:4-5, 9, 8:11, 34, 고전6:14, 15:1-6, 20-22, 고후4:10-11, 13:5, 갈2:20, 엡2:6-8, 골1:27, 2:10,12, 살전4:14, 빌3:10, 히1:3, 4:14, 7:25, 10:10-14).

9.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부활의 보증적 완성이다. 예수의 지상에서의 모든 고난의 생애는 그의 승천에 의하여 하늘나라에 넘쳐흐르는 모든 영광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으니 이는 최고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이다(마26:64, 요14:2-3, 17:24, 행 2:33-36 5:31, 엡1:20-22, 벧전3:22, 히10:12, 계3:21, 22:1).

10. 재림 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그의 재림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요 세상에 날던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전 인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마25:31-34, 눅3:17, 요5:22, 27, 행1:11, 10:42, 17:31, 롬2:16, 14:9, 고전 1:7-10, 고후5:10, 딤후4:1, 딤후2:13, 약5:9, 계1:7).

11.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최후의 명령이다. 여기에는 ① 예수의 명령과 ② 참된 기독교자의 사명과 ③ 세계의 복음화 등 삼대 명제가 함유되어 있다(마28:18-19, 막16:15, 눅24:47, 요17:18, 행1:8, 5:32, 고후5:18-19).

12.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참된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 몸이 되었으며 참된 기독교자들은 그 지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파쟁이나 교권 투쟁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분열될 수도 없으니 이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회에 속한 참된 기독교자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사랑과 평화로써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기에 힘 쓸 것뿐이다(롬12:4-5, 고전1:10-13, 12:12-27, 갈5:13-15, 엡1:22-23, 2:19-22, 4:3-6, 빌 2:1-5).

(별첨2)

설립 목적과 이념

한국성서대학교는 기독교가 자유주의적이요,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이요, 유물주의적인 흐름에 합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목도하면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주의 교리를 교수하여 복음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초교파적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한다.

한국성서대학교는 성서가 가르치는 인류의 영적 구원에 필요한 성서의 심오한 진리와 그 광범위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사상을 심어 국가 사회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영적 구원을 위한 선구자 즉 땅에 떨어져 썩어서 새로운 싹을 내는 한 알의 밀과 같은 역군을 양성하려고 한다.

교육 목표

1.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복종과 봉사적 실천생활을 통하여 생동하는 관계를 가지게 하려고,
2.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봉사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려고,
3.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영원한 소망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려고,
4. 성서가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로서의 건전한 인격자를 찾으려고,
5.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영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손색이 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6. 성서적인 근본주의 신학에 견고히 서서 모든 이단적인 사이비 기독교 학설에 미혹되거나 타협됨이 없이 순수한 성서 중심의 보수신앙을 수호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순수한 복음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역군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7. 유명한 사람이나 어떠한 교파나 교단이나 재물 따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8. 주어진 직장에서 능동적이요 효율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어 봉사하는 지도자를 산출하려고,
9. 성서에 입각한 순수한 복음 진리로써 정신무장을 하고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조국의 지역사회에서 신음하는 모든 겨레들을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조국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척자를 찾으려고,
10.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전 세계 인류의 심령에 평화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명받은 한 알의 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본교의 교육목표이다.

[별지서식3]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소 속		교수 승진일	년 월 일

본인은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정년보장교원임용 대상자 자격을 갖추었기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붙임의 정년보장 심사용 자기기술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서류를 진실하게 작성하였음을 밝히며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자기기술서

자기 기술서

1. 성서인으로서 신앙적 품위와 인격
2. 대학의 교육이념 실현을 위한 공헌
3. 대학발전 기여도
4. 전공분야의 학문발전 기여도
5. 기타(각종 상벌 및 공훈수상 등)

[별지서식4]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평정표

심사 대상자	성명		직급	
	소속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점수	평가 의견 및 기준
정 성	1. 성서인으로서의 신앙적 품위와 인격	20		
	2. 대학의 교육이념 실현을 위한 공헌	20		
	3. 대학발전 기여도	20		
	4. 전공분야의 학문발전 기여도	20		
정 량	5. 근무기준 (최초임용일 기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초과 : 10점 • 10년 초과 ~ 15년 이하 : 6점 • 10년 이하 : 2점
	6. 교수업적평가 최근 3년 평균 점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30% 이상 : 10점 • 상위 30% 미만 ~ 60% 이상 : 6점 • 상위 60% 미만 : 2점
평가점수 총합		100		
<총평>				
심사일		소속		심사위원 (인)